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158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김민전·윤한홍·김상욱

김기웅 • 이종배 • 조경태

박정하 · 김용태 · 서지영

박덕흠 • 이헌승 • 박수민

김예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의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 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급 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
	장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
	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u> 여야 한다.</u>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
	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
	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